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호”를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규모 이하로서 5호”를 “규모 이하로서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을 “날[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로, “3억원”을 “3억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0년”을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제3조제7항제1호 중 “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5호나목”을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5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제1항제2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임대주택 호수의 경우에는 5호에서 3호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취득가격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윤종현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외교통상부 소관)

●대통령령 제22393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5.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거주여권의 발급)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일반여권 중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추가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해외이주 신고를 한 사람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갈음하는 장기 체류사증)이나 이민사증
- 2.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혼인관계증명서 등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 체류 반국가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1년부터 5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여권 관련 행정의 선진화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반여권 중 거주여권의 실효제도를 폐지하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제한(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국외 체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1년에서 5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가 안보라는 공익을 도모함.

나. 거주여권의 실효 제도 폐지(현행 제6조제4항 삭제, 안 제6조의2 신설)

해외이주자에게는 거주여권을 발급하고 거주여권의 소지자가 입국한 뒤 국내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거주여권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거주여권의 실효 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없으므로 여권 관련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거주여권 실효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